

경운대학교 학생생활관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교”라 한다) 부속 학생생활관(이하 “생활관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운영) 생활관은 사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주요 사항들의 행정업무 및 학생 주도적 자기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체적 전인교육 프로그램인 ‘KW-RC’(KyungWoon-Residential College)를 운영한다.

[본조신설 2020.09.01.]

제3조(총괄) 생활관은 학생생활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이 총괄한다. <개정 2019.11.01.>

제4조(개관기간) 생활관 개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개관과 특별개관으로 구분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01.>

1. 정기개관 : 1학기 및 2학기는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한다.
2. 특별개관 : 하계 및 동계방학을 기준으로 하되, 개강 일주일 전까지 개관한다.

[전문개정 2019.11.01.]

제5조(이용제한) 생활관의 시설이용은 사생에 한한다. 다만,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관장은 입주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<개정 2019.11.01., 2021.12.01.>

제6조(학생활동) 학생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 함양을 위한 학생 주도적 활동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.

<개정 2021.12.01.>

제7조 삭제 <2019.11.01.>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8조(조직)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조직을 둔다.

<개정 2021.12.01.>

1. 관장 : 1인
2. 직원 : 약간명
3. 사감 : 약간명

4. 조교 : 약간명

[전문개정 2019.11.01.]

제9조(업무) ① 생활관의 업무는 교육운영지원, 행정운영지원으로 분장한다.

② 교육운영지원의 업무는 KW-RC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기획, 평가, 성과 보고 등과 같은 업무를 한다.

③ 행정운영지원의 업무는 생활관 운영 전반의 행정지원 및 사생들의 안정적인 대학 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업무를 한다.

④ 조교는 교육운영지원과 행정운영지원 업무를 보조한다.

[전문개정 2020.09.01.]

제3장 운영위원회**제10조(설치)** 생활관 관리 운영 및 KW-RC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09.01.>**제11조(구성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재개발처장, 행정지원처장, 학생생활관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<개정 2019.11.01., 2021.10.01., 2021.12.01., 2022.04.01.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관 관장이 된다.

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2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생활관 규정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주요 사항
2. 기타 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20.09.01.]

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주관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4장 생활관 학생자치회**제14조(생활관 학생자치회)** 생활관의 자율적인 사생 관리를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두며 학생 자치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운영 세칙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01.>

[전문개정 2019.11.01.]

제5장 입주 및 퇴관

제15조(입사신청) 생활관 입사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학기마다 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공지사항 및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되, 신입생은 별도의 안내와 공지사항에 따라 신청한다. <개정 2020.09.01., 2021.12.01.>

[제목개정 2020.09.01., 2021.12.01.]

제16조(사생 선발) 생활관 사생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입사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선발한다.

가. 직전학기 동·층장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자 및 현재 학기 동·층장으로 선발된 자

나. 신체 장애가 있는 자

다. 기초 생활수급자

라. 국가유공자 및 자녀

마. KW-RC프로그램 참여 및 생활관에 봉사활동 참가를 통해 상점10점 이상을 취득한 자.

2. 대구·구미지역 이외 거주자로서 입사결격 사유가 없고 성적이 우수한 자(수용인원 미달 시 대구·구미 거주자 포함)

3. 사생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

[제17조에서 이동,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<2020.09.01.>]

[전문개정 2020.09.01.]

[제목개정 2021.12.01.]

제17조(입사) 생활관의 사생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한 학생은 대학홈페이지에 공지한 기한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고 입사 기한 내에 입사를 마쳐야 한다. <개정 2020.09.01., 2021.12.01.>

1. 삭제 <2021.12.01.>

2. 삭제 <2021.12.01.>

[제20조에서 이동, 종전 17조는 제16조로 이동 <2020.09.01.>]

[전문개정 2020.09.01.]

[제목개정 2021.12.01.]

제18조(입사 시 제출서류) ①생활관에 입사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기한내 행정실 제출 및 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9.01., 2021.12.01.>

1. 결핵유무확인서 1부(입사 일 기준 4주 이내에 검진받은 확인서)

2. 사생은 기타 사항에 따라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
 ②생활관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미제출시 입사가 제한된다. <신설 2021.12.01.>
 [제목개정 2020.09.01., 2021.12.01.]

제19조(입사결격 사유)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 할 수 없다.
 <개정 2020.09.01., 2021.12.01.>

1.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2. 「학생생활관 운영 세칙」에 의해 퇴관 처분을 받은 자
3. 법정 감염병 환자 및 보균자와 결핵 유무 확인서 미제출자
4. 휴학 중 이거나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는 자
5. 직전 학기 별점 15점 이상인 자
6. 기타 단체 생활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

[제16조에서 이동,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<2020.09.01.>
 [제목개정 2021.12.01.]

제20조(사생의 의무) 사생은 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사생은 생활관 규정 및 세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2. 사생은 생활관의 시설 및 비품을 보호해야 하며 파손시 변상 조치 해야 한다.
3. 사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실로 통보하여야 한다.
 - 가. 생활관시설 및 비품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
 - 나. 화재, 긴급 환자등과 같은 중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
 - 다. 생활관내 법정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
 - 라.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
4. 모든 사생은 생활관에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리자 및 당직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5. 사생은 상·벌점, 시설·점검 등과 같은 생활관 거주와 관련된 상황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.

[종전 제20조는 제17조로 이동 <2020.09.01.>
 [본조신설 2020.09.01.]

제21조(퇴관 및 강제퇴관자) ① 생활관 퇴관은 중도퇴관, 만기퇴관, 강제퇴관으로 구분한다.
 <개정 2019.11.01., 2020.09.01., 2021.12.01.>

1. 중도퇴관은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과 불유불급한 사항으로 인해 학사일정 조기 종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중도 퇴관할 수 있다.
2. 만기퇴관은 대학이 정한 학사일정 종료 기준을 준용하여 생활관에서 설정한 퇴관일정에 따라 퇴관한다.
3. 강제퇴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「학생생활관 운영세칙」 제20조(벌점제) 위반한 사생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 퇴관을 할 수 있다.
 - 가. 학칙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
- 나. 생활관비를 기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
- 다.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자
- 라. 법정 감염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
- 마. 학생생활관 운영 세칙을 위반하여 벌점 15점이상 처분을 받은 자
- 바. 기타 생활관 사생으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
- 사. 자진 퇴관 및 강제 퇴관자는 사전 공고 후 퇴관 신청 기준일로부터 3일 안에 퇴관 한다.

② 퇴관절차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11.01., 2020.09.01., 2021.12.01.>

1. 퇴관 하고자 하는 학생은 퇴관 2일전에 해당 동·층장·직원에게 호실 시설점검·공동비품 및 청결상태에 대한 확인 점검을 받아 시설물 점검증을 받는다.
2. 학생이 거주한 호실의 시설물 점검 확인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환불 신청 후 퇴관당일 행정실에 시설물 확인증과 열쇠를 반납한다. 다만, 학생의 거주한 호실의 시설물 파손, 손괘, 훼손 등과 같은 사항이 발각될 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삭제 <2021.12.01.>

[제19조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<2020.09.01.>]

[제목개정 2021.12.01.]

제22조(상·벌) ① 관장은 생활관 사생이 생활관내 봉사·선행 및 RC프로그램 참여 우수 성과자로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받아 상점을 부여하고 차기 학기 생활관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01., 2020.09.01.>

② 학생생활관 운영 세칙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관장 또는 직원·조교가 벌점을 부과하여, 벌점 부과 내용은 「학생생활관 운영세칙」 제20조(벌점제)에 따라 부여한다.

<개정 2019.11.01., 2020.09.01.>

③ 벌점을 부여받은 자는 직후 학기 선발 및 배정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<개정 2019.11.01.>

[제21조에서 이동 <2020.09.01.>]

제6장 재 정

제23조(경비부담) 생활관 시설의 사용에 따른 제반 경비는 관리비로 부담한다.

<개정 2019.11.01.>

제24조(생활관비) ① 생활관비는 관리비, 시설보증금, 자치회비로 구분한다.

<개정 2020.09.01.>

② 생활관 중도 입사자는 아래와 같이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0.09.01., 2021.12.01.>

입사구분	관리비	자치회비	시설보증금
4주 이내 입사	100%	100%	100%
8주 이내 입사	75%	100%	100%
8주 이후 입사	50%	100%	100%

③ 정규학기 이후 거주 시 발생 될 수 있는 생활관비에 대해서는 일일 계산 하여 납부 한다. <개정 2019.11.01., 2020.09.01.>

④ 생활관에 선발된 학생이 입사기간 이전에 미 입사시 생활관비는 전액 환불 한다.

<개정 2019.11.01., 2020.09.01., 2021.12.01.>

⑤ 생활관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 한다 <신설 2019.11.01., 2020.09.01.>

퇴관구분	관리비	시설보증금
1주이내	90%	100%
1주이후 4주이내	75%	100%
4주이후 8주이내	50%	100%
8주이후 12주이내	25%	100%

단, 기준 이외의 환불 상황 발생시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.

제25조(생활관비의 납부기일) ① 납부기일 내에 미 납부시 선발 취소 및 입관이 제한된다.

<개정 2019.11.01., 2020.09.01.>

1. 매 학기 납부고지서에 공지한 기한 내 납부 한다.
2. 삭제 <2020.09.01.>

제26조(관리비의 용도) 생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. <개정 2020.09.01.>

[제목개정 2020.09.01.]

제27조(예산과 결산)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 방식에 따른다.

- ① 삭제
- ② 삭제
- ③ 삭제

제28조(게스트룸) 게스트룸 별도의 운영지침을 준용하며, 사용대상자 및 관리비는 관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 <개정 2020.09.01.>

[전문개정 2019.11.01.]

제29조(운영 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

는다. <개정 2021.12.01.>

[전문개정 2019.11.01.]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11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09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12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04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